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7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6. 3.

2027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I 목적

1.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중·고등학교 교육의 연계 체제 확립
2.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합리성·타당성·다양성 제고

II 기본 방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88조, 제89조의2~제92조, 제97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고등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

- 일반고 :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아래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 특수목적고 :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자율고 :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 전·후기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

- 전기학교 :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개정 2017.12.29.)
- 후기학교 : 전기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개정 2017.12.29.)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2.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체험위주교육전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체능학과, 특성화과)의 전형은 전기에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에 의한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 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되,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나. 전기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 전형 학교 포함)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별로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한다.
- 다. 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전기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의 다른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 2)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라. 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해야 한다.
 - 2) 외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 마. 전형 결과 입학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별도의 일정에 의하여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을 실시 (**학교 누리집에 모집 공고 게시 필수**)하여야 하며,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은 모집 정원에서 정원 내 합격자를 뺀 인원으로서 한다.
- 바.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에서 제외하며, **입학 후 전.편입학으로 충원한다.**
- 사. 정원 미충원교의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에는 원서접수일 현재 불합격이 확정된 자 또는 미지원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입학식 이후 수시모집 시 다른 학교 합격자 또는 입학생을 합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학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중원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한다.)
- 아.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수시모집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2026학년도** 고입전형의 수시모집 기한은 **2026. 5. 22.(금)** 이내로 한다.
4. 입학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신 중학교 교원의 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할 수 있다. 단,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전형요소 및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과학고만 해당)를 전형자료로 하여 입학전형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100% 선발한다.

5.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형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배제(배제사항의 간접적·우회적 기재·발언도 금지)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및 각종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도교육청의 입학전형 점검 결과, 동일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학교와 개인은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5년 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사유로 활용함.)

6. 과학고, 외국어고는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지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며,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그 밖에 교육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 이상 우선선발

나. 사회다양성전형 :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다.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보호자 확인서 첨부)

7.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학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8.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내신성적은 당해 시도의 내신성적 규정에 의해 산출한 석차연명부(학년석차백분율이 기록된 경우)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 단, 석차를 보정하여 석차백분율을 산출하는 시도는 예외로 한다.

9.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은 개인이 검정고시에서 취득한 평균 점수를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석차백분을 산출 조건표에 따라 산출한다.
10.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 로 선발한다.
11.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입학할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 유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선발한다.(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고,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3. **특수교육대상자**는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의 선정·배치 결과에 따른다. (의무교육)
14.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학전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형 업무에 공정성·합리성·타당성을 기하며,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 현황을 학교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 공개한다.
15.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하에 **절대 금한다**.

▣ 이중지원 사례(예시) ▣

- 한 학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도내(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추가모집 또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미등록 또는 학년 초 자퇴를 하고 **같은 학년도** 다른 고등학교 수시모집에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가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¹⁾**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가.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와의 이중지원도 금한다**.

※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형 시기 및 타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일자 및 전형 일정이 다르더라도 2개교에 지원 불가)

1)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 학교 포함)

나.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불합격한 자가 전·후기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원자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중지원 허용 사례(예시) ▣

- 평생교육시설에 합격한 학생이 전·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방송통신고등학교 합격한 학생이 전·후기 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군인자녀를 위한 모집학교(한민고, 영천고)에 지원하는 경우
- 영재학교(과학고가 아닌)에 합격한 학생이 전·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16.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본 기본계획에 따라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다음 학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실시 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17. 본 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상위 법령·지침의 변경,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18.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행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III 지원 자격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란 2026년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임.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재학 기간은 2026. 3. 1.~2027. 2. 28.임**), 2026년 12월 또는 2027년 1월 졸업식을 했더라도 2026학년도에 중학교에 재학한 학생은 졸업예정자임.
 - ※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함.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다.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거주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가.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 거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소주동·덕계동·평산동 및 하북면과 울산광역시 삼남읍 방기리, 삼동면 보은리·금곡리·조일리, 웅촌면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211-1109, 1999. 10. 4.> <2007년 행정구역 개편>
 - 나. 부산광역시 (구)가락중학교(강서구 가락도 소재) 졸업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414-839, 2002. 7. 29.>
 - 다.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부산시교육청 지원과-1656, 2021. 3. 2.>
 - 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경남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14586, 2023. 8. 14.>
 - 마.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대구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14586, 2023. 8. 14.>
4.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도내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5. 경남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 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경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2025. 3. 1.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개 기관)

6. ‘군인자녀’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012. 12. 20.)
 - ※ 군인 자녀 : 「군인복지 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7.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할 시,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가.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²⁾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2-10호, 2022.8.9.)

나. 꿈키움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장목예술중학교 졸업예정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시 중학교 소재지와 인접 타학군, 또는 거주지 평준화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라.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외국 소재 한국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1) 거주지가 평준화 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³⁾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2-10호, 2022.8.9.)

2) 거주지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

8. 외교(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 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위의 7번에 준한다.)

9.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0.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11.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하여 **중학교 3학년은 10월 31일까지 전입학을 허용**한다. 단, 가정폭력 피해 학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2)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12.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을 제한한다. 단, 검정고시 졸업자는 입학 가능하나,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6789(2025. 9. 15.) 시행 공문에 의해 2025년 9월부터 시행함.)

IV 고등학교 전형 시기별 전형계획

※ 고입전형 지원 온라인 시스템 개발에 따라 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전기학교 전형

가. 기본 방향

- 1)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 전기학교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타 전기·후기·추가·수시)에도 지원할 수 없다. 단,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일반고의 특성화과 포함)에 다시 지원할 수 있고,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 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3)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는 추천입학제를 신청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 비교과 주요 자료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학교별 필기고사,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면접, 적성 검사 등은 금지한다. (추천입학제 신청은 전형 요강 승인으로 대체한다.)

나. 대상 학교별 전형 방법

1) 과학고

- 가)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나) 자기주도학습전형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전형 계획에 의한다.
- 다)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한다.

- 라) 학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 마) **특례입학대상자와 교육지원대상자**는 각각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한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2)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고

- 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별로 별도의 내신성적 산출방식(반영 교과, 학년, 기간,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내신성적을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 나) 학교장은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와 관련된 특기자(음악, 미술, 체육, 무용, 컴퓨터 등)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집 정원의 10%까지 특별 선발할 수 있다. 특기자 선발기준 및 방법은 해당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한다. 단, 체육·무용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방법에 따른다.
- 다) 특정 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입학 정원의 30% 이상(정원 내)으로 한다.
- 라) 마이스터고와 특정 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다.
- 마)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일정을 분리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다. 학교별 공통사항

- 1)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2)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할 희망할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지원 학생 명의

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 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고,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4) 합격점(컷라인)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5)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통지한다.
 - 6)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가)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나)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다) 3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 7)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이 없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8) 기타 사항
 - 가) 특성화고는 입학 배제 조건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전형요강에 명시한다.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인 색맹, 색약 등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삼간다.)
 - 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교육지원청은 원서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이중원서 발급에 유의)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작성이 어려운 타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 다) NEIS 입·진학 업무 처리(*NEIS 시스템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입학업무 처리를 위해 선발된 입학대상자를 일괄 추가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중학교 코드, 성명, 반 코드, 번호를 수집하여야 편리함(원서 양식 작성 시 유의)
 - (2) 학교 코드(10자리)는 [업무분장 설정업무] 권한을 가진 직원이 [시스템관리-조직코드-조직코드관리-기관별 조직조회] 에서 해당 학교 포함 학교 코드 검색 가능

(3) 반 코드(2자리)는 NEIS [학교정보권한]을 가진 직원이 [학교정보 -기준반정보 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반 코드와 반명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2. 후기학교 전형

가. 외국어고

- 1)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2) 자기주도학습전형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전형 계획에 의한다.
- 3)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한다.
- 4) 외국어고는 학과별로 선발한다.
- 5) 학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 6) 특례입학대상자와 교육지원대상자는 각각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한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나. 평준화지역 일반고(안)

※ 본 내용은 ‘안’ 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평준화지역 고입전형 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1) 기본 방향

-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 나) 전형방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을 근거로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한다.
- 다) 입학전형은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실시한다.

▣ 평준화지역 학군 ▣

- | | |
|----------------------|--------------------------|
| ● 1학군 : 창원시의 성산구.의창구 | ● 2학군 :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 ● 3학군 : 진주시 | ● 4학군 : 김해시 |
| ● 5학군 : 거제시 | |

※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아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

창원대산고등학교, 창원북면고등학교, 마산삼진고등학교, 진서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김해울하고등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이상 11개교, 대곡고등학교는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라)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마) 외교(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 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 (1)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⁴⁾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2-10호, 2022.8.9.)
- (2)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 (3)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 거주지가 평준화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⁵⁾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2-10호, 2022.8.9.)

● 거주지가 비평준화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지역 학군에 지원

바) 학군별 학교 배정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지망학교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한다.

사)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아)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희망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선발.배정된 자 중, 해당 학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한다.

4)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방법

- 가) 경상남도 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나이스 교무업무 학적 정보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하여 출신 중학교별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나) 입학원서 작성 시에는 입학전형 합격 후 배정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각 평준화 지역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하여 제출한다. 단, 외고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경우 1지망은 외고를 지원하고, 2지망부터 일반지원자와 동일하게 복수 지원한다.

▣ 평준화지역 해당(희망) 학군 지원(예시) ▣

구분	1지망교	2지망교	3지망교	4지망교	5지망교	...
일반지원자	A교	B교	C교	D교	E교	...
동시지원자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A교	B교	C교	D교	E교

- (1) 우선배정신청서 제출자(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 다자녀 학생, 중증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의 자녀)는 **1개교**만 지원한다.(학교 배정 방법 참조)
- (2)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는 **1개교**, 특례입학대상자는 **3개교**만 지원한다.

※ 위의 (1),(2) 해당 학생 중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배정 요청 학생)은 해당 학군의 모든 학교에 희망하는 순으로 지원한다.

- 다)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학군별 교육지원청은 고입원서 작성대장 비치)
- 라)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지원 학생 명의로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마) 체육특기자 전형 응시자는 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심사계획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바) 특례입학대상자는 도교육청의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계획에 따라 출신중학교(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 확인 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도교육청 진로교육과에 접수한다.

3) 학생 선발 방법(합격자 사정)

- 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입학 총정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하되, 일반지원자와 동시 지원을 희망하는 외고·자사고·국제고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 나) 합격점(컷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 다)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군별로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라) 체육특기자로 확정을 받은 자는 학군별로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청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마)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군별로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바)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충원 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통지한다.
- 사)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 (1)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 3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 평준화지역 내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1) 기본 방향

- 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교별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다. 단, 자율학교 일반고는 학교별 별도의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내신성적을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2) 지원 방법

- 가) 지원자는 고등학교별 실시계획에 따라 원서 작성 후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또는 학교별) 접수한다.
- 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교육지원청은 고입 원서 작성 대장 비치)
 -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작성이 어려운 타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 다)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 라)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 마)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 절차는 해당 고등학교별 실시계획에 따른다.
- 바)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3) 전형 방법

- 가) 전형 일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학전형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 나) 합격점(컷라인)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이 없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라)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교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마) 체육특기자는 교육지원청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바)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교별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도교육청 특례입학전형 지침 준수)

사)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통지한다.

아)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1)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 3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V 연수 및 홍보

1. **2027학년도** 고입전형 관리업무는 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본 계획에 준해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3.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한다.
4. 중·고등학교 고입전형 업무 담당자(또는 관리자) 및 중학교 3학년 부장(담임)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바른 진학 및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VI 주요 업무 일정(예정)

업무 내용		일 정	비 고
기본계획 설명회		2026. 4. 21.(화) ~ 4. 28.(화)	지원청 고입 담당자 중·고등학교 부장 및 교감, 중3 부장(담임)
학교별 실시계획 승인신청~공고 일정			
고입 전형 요강	승인 신청	특목고(과고)	2026. 5. 1.(금)까지
		특목고(체육고)	2026. 5. 1.(금)까지
		특목고(마이스터고3)	2026. 6. 8.(월)까지
		특목고(예술고)	2026. 6. 8.(월)까지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2026. 6. 11.(목)까지
		특목고(외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교 포함)	2026. 7. 16.(목)까지
	승인	특목고(과고)	2026. 5. 15.(금)까지
		특목고(체육고)	2026. 5. 15.(금)까지
		특목고(마이스터고3)	2026. 6. 19.(금)까지
		특목고(예술고)	2026. 6. 19.(금)까지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2026. 7. 9.(목)까지
		특목고(외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교 포함)	2026. 8. 13.(목)까지
	공고	특목고(과고)	2026. 5. 20.(수)까지
		특목고(체육고)	2026. 5. 20.(수)까지
		특목고(마이스터고3)	2026. 6. 26.(금)까지
		특목고(예술고)	2026. 6. 26.(금)까지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2026. 7. 14.(화)까지
		특목고(외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교 포함)	2026. 8. 18.(화)까지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 평준화지역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		원서접수 2026. 12. 10.(목) ~ 2026. 12. 14.(월)	합격자 발표 : 2027. 1. 8.(금) 합격자 배정 발표 : 2027. 1. 15.(금)

※ 내신성적은 3학년 2학기 2차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2026. 11. 18.(수)**까지 산출하고, 비교과는 **2026. 11. 16.(월)**까지의 사항을 반영한다.

※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개정, 타 시도 일정, 학생수용계획 확정, 감염병, 천재지변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VII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시기	학교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전기 (49)	특목고 (8)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1 (공군항공과학고)	2026.7.13.(월) ~ 7.17.(금)	2026.7.20.(월) ~ 10.16.(금)	2026.10.23.(금)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3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2026.10.19.(월) ~ 10.22.(목)	2026.10.27.(화) ~ 11.3.(화)	2026.11.4.(수)		
		과학고2 (경남과과, 창원과과)	2026.8.24.(월) ~ 8.27.(목)	2026.9.1.(화) ~ 11.30.(월)	2026.12.1.(화)		
		체육고1 (경남체육고)	2026.8.24.(월) ~ 8.27.(목)	2026.8.28.(금) ~ 9.15.(화)	2026.9.16.(수)		
		예술고1 (경남예술고)	2026.10.12.(월) ~ 10.15.(목)	2026.10.16.(금) ~ 10.27.(화)	2026.10.28.(수)		
	특성 화고 (35)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31 거제여자상업고, 거창승강기고, 경남간호고, 경남관광고, 경남로봇고, 경남산업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한일여고, 남해정보산업고, 마산공고, 밀성제일고, 사천여고, 선명여고, 신반정보고, 진영제일고, 진주기계공고, 한국과학기술고, 창원슈퍼텍고, 창원공고, 창원기계공고, 초계고, 한일여고, 함양제일고, 양산인공지능고 * 일반고 특성화과[삼가고(조리과), 창녕여고(보건간호과)] (전국 모집- 경남자영고, 경남정보고, 경남항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김해건설공고)		2026.11.20.(금) ~ 11.24.(화)	2026.11.25.(수) ~ 11.26.(목)	특별전형 2026.11.27.(금)	
		체험위주 특성화고 4 태봉고, (전국 모집- 간디고, 지리산고, 합천평화고)					
		각종학교 (5교)	거창연극고, 경남고성음악고, 김해금곡고, 남해보물섬고, 밀양영화고	2026.11.27.(금) ~ 12.1.(화)	2026.12.2.(수) ~ 12.3.(목)	일반전형 2026.12.4.(금)	
	고등기술 학교(1)	경남전자고					
	추가	전기 미달학교		2026.12.7.(월) ~ 12.9.(수)	2026.12.10.(목)	2026.12.11.(금)	
후기 (152)	특목고 (2)	외국어고 2	2026.12.10.(목) ~ 12.14.(월)	2026.12.15.(화) ~ 12.23.(수)	2026.12.24.(목)		
		김해외고, 경남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일반고 (150)	비평준화지역(학교장전형 76) 거창중앙고, 고성고, 곤양고, 군북고, 금남고, 남지고, 남해고, 단성고, 대성일고, 덕산고, 동원고, 명덕고, 물금고, 밀성고, 밀양고, 밀양동명고, 밀양여고, 범어고, 보광고, 사송고, 사천고, 산청고, 삼가고, 삼랑진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중앙고, 서상고, 서창고, 아림고, 안의고, 야로고, 양산고, 양산남부고, 양산여고, 양산제일고, 옥종고, 영산고, 용남고, 웅상고, 웅천고, 의령고, 의령여고, 중산고, 진교고, 진해고, 진해세화여고, 진해여고, 진해용원고, 진해중앙고, 창선고, 철성고, 충렬여고, 통영고, 통영여고, 하동여고, 합천여고, 충무고, 신향고(가칭)		2026.12.10.(목) ~ 12.14.(월)	2026.12.15.(화) ~ 12.23.(수)	2026.12.30.(수)	
		평준화지역(학교장전형 11) 창원대산고, 창원북면고, 마산삼진고, 진서고, 진주외고, 진영고,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수남고, 김해율하고, 장유고					
	평준화지역(교육감전형 63) (구)창원시 19교, (구)마산시 13교, 진주시 11교, 김해시 12교, 거제시 8교		2026.12.10.(목) ~ 12.14.(월)	2026.12.15.(화) ~ 12.23.(수)	합격자 발표 2027.1.8.(금) 합격자 배정 발표 2027.1.15.(금)		
추가	추가	평준화지역 미달 학군, 전-후기 미달학교	2027.1.12.(화) ~ 1.14.(목)	2027.1.15.(금) ~ 1.20.(수)	2027.1.21.(목)		
수시	수시	추가모집 미달학교(해당 학교 학사일정과 수업일수에 따라 기한 일자는 다름)	2027.1.25.(월) ~ 5.21.(금)	수시	수시		

- ※ 일정 및 학교구분은 관련 법령 개정, 타 시도 일정, 학생수용계획 확정, 감염병, 천재지변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학교별 전형 관련 세부 일정은 반드시 해당 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바람)**
- ※ **학력인정고(경남미용고)** 전형은 전기 특성화고 일정과 같으나, 학교 모집요강에 따르며 본 지침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
- ※ **대곡고는 학교 이전 준비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음. 2028학년도 진주 평준화지역으로 이전 예정**
- ※ **신동고는 폐교 예정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음**
- ※ **장평고(가칭) 개교 예정(평준화), 신향고(가칭) 개교 예정(학교장)**
- ※ () 는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임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

I 목적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연계 체제를 확립한다.
3.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 선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II 기본 원칙

1. (적용 대상) 이 지침은 2026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등에게 적용한다.
2. (산출 근거)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3. (기준일) 교과는 3학년 2학기 2차 고사까지 반영하여 2026. 11. 18.(수)까지 산출하고, 비교과는 2026. 11. 16.(월)까지의 사항을 반영한다.
4. (총점, 합격자 사정 자료) 내신성적 총점은 200점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내신석차 백분율을 합격자 사정 자료로 한다.
5. (배점 및 비율) 영역별 배점과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비율	총점	석차 백분율
교과		성적 존재 학기에 한해 학기별 동일 배점 부여			160점	80%	200점	%
비교과	출결상황	10점	10점	10점	40점	20%		
	학교활동	2점	2점	2점				
(기본 4점)								

가. 영역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며 교과영역 합계 160점(80%), 비교과영역 합계 40점(20%) 만점으로 산출한다.

나. 교과 영역은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중에서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학기는 제외하고,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에 한해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다. 비교과영역은 출결상황, 학교활동으로 구분하고 전 학년을 반영하되, 영역별 배점은 각각 30점, 10점으로 한다. 단, 학교활동의 기본점은 4점이며, 가산점은 학년별로 2점 범위에서 활동에 따라 가산한다.

6. (석차백분율) 석차백분율은 총점에 따른 개인별 석차와 학년 재적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7. (석차연명부) 중학교는 내신석차 백분율이 기록된 소정의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 전형에 활용한다. 경우에 따라 석차연명부 대신 ‘내신성적 통지표’ 또는 ‘내신성적 증명서’를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8. (보존 연한) 석차연명부를 비롯한 내신성적 산출물은 파일로 내부 결재를 득하되, 보존 연한은 폐지한다.

III 산출 방법

1. 졸업예정자(경남)

가. 교과 점수(160점, 80%)

- 1) 교과 점수는 학기별 점수의 총합으로 한다.
- 2) 학기별 점수(S_{ij})는 성취도 환산점과 원점수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S_{ij} = \frac{20}{K} \left(\frac{a_{ij}}{b_{ij}} + \frac{c_{ij}}{d_{ij}} \times 0.03 \right)$$

i : 학년, j : 학기, K :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 수

a_{ij} : 성취도 환산점 총합(체육, 예술교과 포함), b_{ij} : 과목수(체육, 예술교과 포함)

c_{ij} : 원점수 총합(체육, 예술교과 제외), d_{ij} : 과목수(체육, 예술교과 제외)

■ 교과 점수는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취도 환산점 산출

■ 교과와 과목별 성취도(평어/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성취도 평어 득점	A 수	B 우	C 미	D 양	E 가
	100 ~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환산점수	5	4	3	2	1

■ 단, 체육·예술교과의 과목별 성취도(등급/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성취도 등급 득점	A 우수	B 보통	C 미흡
	100 ~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환산점수	5	4	3

■ 성취도 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출결상황 점수

- 1) 합계는 30점(15%)으로 하고, 학년별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 2) 출결상황 점수는 미인정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학년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 3) 결석일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기타 결석은 제외하고 미인정 결석만으로 산출한다.
 -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한다. (3회 미만은 버림)
- 4)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른 학년별 출결상황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일수	0	1~2	3~4	5~6	7~8	9~10	11~12	13~14	15 이상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기본점)

다. 학교 활동 점수

- 1) 합계는 10점(5.0%)으로 하고, 기본점은 4점, 학년별 가산점은 2점으로 한다.
- 2) 가산점의 인정 기준(대상, 기간, 횟수, 점수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3) 가산점 인정 기준(예시)
 - 가) 모범학생 표창(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 0.5점
 - 표창(상) :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 나) 각종 교내 대회 학교장 표창(상) : 0.5점
 - 다)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임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 : 0.5점
 - 임원 :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임원을 겸임한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라. 석차연명부 작성

- 1) 소정의 「석차연명부」를 <서식 1>, <서식 2>와 같이 작성한다.
- 2) 석차는 총점을 기준으로 남녀 구별 없이 통합하여 산출한다.
- 3) 총점이 같을 경우, 석차는 교과, 출결상황, 학교활동 고득점 순으로 산출하며, 그래도 같을 경우에는 동석차로 처리한다.
- 4) 석차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석차백분율} = \text{석차} \div 3\text{학년 재적수} \times 100 \text{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3학년 재적수는 교과성적 산출 기준일 2026. 11. 18.(수) 인원으로 한다.

5) 교과성적 산출 기준일 현재, 3학년 재적수가 **13명 미만인** 소인수 학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먼저, 실제 재적수를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 나) 별도로, 가상 재적수 13명을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보정하고, 이에 따라 내신성적이 산출된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한다.

2. 졸업예정자(타 시도)

가. 당해 시도의 내신성적 산출 규정에 의해 산출된 석차연명부(내신 석차백분율이 기록된 경우)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석차를 보정하여 석차백분율을 산출하는 시도⁶⁾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석차연명부의 석차와 재적수에 따른 석차백분율을 재산출하여 적용한다.

나. 석차연명부가 없는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전형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평준화지역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하여 학기별 개인 교과 성적의 총합을 산출하되, 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은 기준학교(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창원시 3학년 최다인수 학교)의 내신석차연명부 교과성적 총합에 해당하는 학생의 석차백분율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단, 지원자의 학기별 개인 교과 성적이 기준치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차하위 근사치를 적용한다. <서식 7-1 활용>

다. **2027학년도** 고입 내신 석차백분율 기준학교는 감계중학교로 한다.

3. 졸업자

가. 석차연명부가 있는 경우에는 졸업 당해의 내신 석차백분율을 그대로 인정한다.

나. 석차연명부가 없는 경우(**비교과 영역은 제외**)

1) 2015. 2. 졸업자

타 시·도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다.

2) 1997. 2. 졸업자부터 2014. 2. 졸업자까지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과목별 석차와 재적수(수강자 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평균을 내신성적 석차백분율로 한다.

나) <서식 7-2>의 「내신성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한다.

6) 부산, 충남, 전남의 경우 (석차-0.5)/재적수*100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하고 있음.

- 석차백분율 = (1학기 석차백분율 + 2학기 석차백분율) ÷ 2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학기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합 ÷ 이수 과목 수
- 과목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 ÷ 과목별 재적수(수강자 수) × 100

3) 1996. 2. 이전 졸업자까지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석차와 재적수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 나) <서식 7-2>의 「내신성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한다.

$$\text{석차백분율} = \text{석차} \div \text{재적수} \times 100 \text{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검정고시 합격자

-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한 시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건표>를 따른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건표(예시)

평균점수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00	0.78	0.28	0.58	0.37	2.77	0.00	0.27	0.00	0.00	0.00
99	3.91	2.26	2.92	3.32	5.93	1.19	0.81	1.00	0.77	0.61
98	5.21	3.95	3.80	5.17	8.70	1.49	2.16	2.67	1.80	1.22
97	7.29	6.50	7.31	7.75	11.86	5.07	4.32	4.33	3.08	3.36
96	7.81	7.63	8.77	8.12	14.23	6.57	5.68	5.33	4.88	5.50
95	10.16	10.45	11.40	12.18	18.18	10.15	10.27	7.67	7.46	7.34
94	12.50	12.43	12.87	15.50	20.55	13.13	11.89	10.00	9.00	8.56
93	16.67	15.54	17.84	19.93	24.90	16.72	15.95	11.67	11.31	12.23
92	17.71	17.80	22.51	22.14	28.06	19.40	18.38	14.67	14.40	14.68
91	22.66	19.49	27.49	23.25	31.23	23.28	21.35	15.67	17.48	17.13

- ※ 구)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도 이 조건표의 해당연도 석차백분율을 따름
- ※ 실제 조건표는 추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교육청 고입포털에 공지함

- 나. 석차백분율은 합격연도와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위 조건표를 참조하여 구한다. 이때, 조건표 상의 평균점수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로 한다.

IV 기타 사항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관리된 학생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에 따라 재학생 수에 포함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귀국자 중 미인정 유학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해당 학년 출결상황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며, 해외에서 취득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비교과 영역의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각 영역별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해당하는 지원자 및 내신석차 연명부 마감일 이후 중도입국자 등 석차연명부가 없는 경우 최저점(100%) 부여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붙임] 각종 서식

<서식 1> 석차연명부 표지(A4, 상철)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졸업예정자)

작성일 : 2026. 11. 18.

○○중학교

<서식 2> 석차연명부 내용(A4, 상철)

석차연명부

석차	3학년		성명	성별	영역별점수				총점	석차 백분율
	반	번			교과	출결 상황	학교 활동			
325					160	30		10	200	%
1	07	05	○○○	남						
:	:	:	:	:						
:	:	:	:	:						
325	11	34	○○○	여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2026. 00. 00.

○○ 중 학교 장 [인]

- * 모든 쪽의 하단에 학교장이 확인하고 직인으로 날인함.
- * 재적수 : 석차 바로 아래 칸에 작성함.
- * 반/번호 : 각각 두 자리 숫자로 표기함.(예: 7반은 07로, 5번은 05로)
- * 교과 점수 :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 *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점수 :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출함.
- * 석차 : 총점을 기준으로 산출함.
 - 총점이 같을 경우 : 교과, 출결상황, 학교 활동 고득점순으로 산출하고,
 - 그래도 같을 경우 : 동석차로 처리함.
- * 석차백분율 : 석차와 3학년 재적수를 기준으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 * 보정 처리 : 교과성적 산출 기준일 현재, 3학년 재적수가 13명 미만인 소인수 학교

- 먼저, 실제 재적수를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 석차연명부를 작성함.
- 별도로, 가상 재적수 13명을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보정하고, 이에 따라 내신성적이 산출된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 고입 전형에 활용함.

<서식 3> 교과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교과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20 .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
1	○○○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합계												
		과목수												
		학기별 점수												
교과성적														

<서식 4> 출결상황 산출 보조부

출결상황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20 .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학년	무단 결석 일수	미인정					합산 결석 일수	점수	출결상황 성적
				지각수	조퇴수	결과수	소계	환산 결석일수			
1	○○○	1									
		2									
		3									

<서식 5> 학교활동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학교활동 내신성적 산출 보조부 20 .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기본점	가산점			학교활동 성적
			학년	내역(점수)	합계(1.0)	
1	○○○	4	1			5.0
			2			
			3	백일장 우수(0.5), 학생회장(0.5)	1.0	

<서식 6> 내신성적 종합일람표

내신성적 종합일람표 20 .00.00. 3학년 0반 담임 ○○○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번호	성명	교과	출결상황	학교활동	총점	석차 백분율	내신성적	석차

<서식 7-1> 내신성적 증명서(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타 시도 졸업(예정)자용)

내신성적 증명서

출원(제출) 연월 : 2027 2 월 3학년 반 반 성별 : 성명 : 학기수 5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선택(합문)		선택 2		선택 3		체육		음악		미술		총점	석차 백분율	과목수	학기별 평균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합	평							
1학년1학기																																			
1학년2학기																																			
2학년1학기																																			
2학년2학기																																			
3학년1학기																																			
3학년2학기																																			

1 페이지

부부를 입력하면 내신석차백분율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각 학기마다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비워두고, 이수한 과목만 입력함*
 *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 수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내신 교과성적 : 0.0000 내신 석차백분율 : 2026. . .

작성자 직위 : 담임 성명 : (인)

도 ☆☆ 중 학교장

<서식 7-2> 내신성적 증명서(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2014. 2. 이전 졸업자용)

내신성적 증명서

3학년		성명	성별	졸업연월	석차백분율 (%)
반	번				

20 . . .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시·도 ○○중학교장 ○○○ [직인]

- * 작성 대상 : 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2014.2. 이전 졸업자 (단, 비교과 영역은 제외)
- * 졸업연월 : 예시) 1996.2. / 1997.2.
- * 석차백분율 : 학교생활기록부를 참조하되, 졸업 시기에 따라 달리 기록함
 - 1996.2.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석차와 재적수(수강자 수)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 석차백분율 = 석차 ÷ 재적수 ×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997.2. 졸업자부터 2014.2.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과목별 석차와 재적수(수강자 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평균을 내신성적 석차백분율로 한다.

. 석차백분율 = (1학기 석차백분율 + 2학기 석차백분율) ÷ 2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학기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합 ÷ 이수 과목 수
 . 과목별 석차백분율 = 과목별 석차 ÷ 과목별 재적수(수강자수) × 100

<서식 8>

인 우 보 증 서

(타 시도 주소지 거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인 가정폭력 피해 학생용)

사건본인 : 홍길동 (20년월일생)

본 적 : ○○광역시 ○○구 ○○동 100번지

주 소 : ○○광역시 ○○구 ○○동 11-1

홍길동(123456-7891000)은 홍길동의 친부(또는 친모)에 의해 00년 00월 00일부터 이 00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음을 보증함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보증인 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년 월 일

보증인 : 00보호시설 박보호 (인) (년월일생)

본 적 : ○○시 00동 11-1

주 소 : ○○시 ○○구 ○○동 10번지

(위 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것)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7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기타 전형

2026. 3.

2027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기타 전형

I 사회통합 전형

1. 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
- 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과학고, 외고)
-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도 공동 개선방안 발표(교육부, 2013.4.11.)
- 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도 공동 개선안 후속조치 안내(2013. 4.19.)
- 마. 사회통합 전형 제도 개선방안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2014.5.2.)
- 바. 2019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포 안내(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3.26.)
- 사.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소득확인 방법 안내(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3825, 2026. 3. 12.)

2. 목적

-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 나. 심의 및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선발

3. 주요 내용

- 가. 2027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실시 학교

대상	학교 수	해당 학교(설립)	비고
과학고	2	경남과학고(공립), 창원과학고(공립)	필수
외국어고	2	김해외국어고(공립), 경남외국어고(사립)	"

- 나.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 모집 정원의 20% 이상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사회통합전형)<2024.2.1.>

영 제90조제1항제5호, 제6호의 학교(과학고,외고,국제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지원 자격 판단 기준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교육비 지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금 (법정 대상자 제외)

- 1) 기회균등 전형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교육비 지원 확인서로 판단
- 2) 사회다양성 전형 : 모든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은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판단

4. 세부 계획

가. 기회균등 전형

- 선발 비율 :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50% 이상 우선 선발 의무화 (기회균등 전형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선발 가능)
-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 법정 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대상자	지원 자격	해당자별 추가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 1부(해당자)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의료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증명서,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등)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교육비 지원 확인서
학교장 추천자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확인서1부(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 중학교장은 2027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 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학교장 추천자 대상자 선정(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인 부양의무자가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절차 진행 중이라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선정 절차】

- 중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시 현장 확인)를 토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예시 : 실직급여 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의 단순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 필요

나. 사회다양성 전형

-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소득 범위 이하 대상자를 선발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 법정 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 공통 서류 : 표 하단 참조)

대상자	지원 자격	해당자별 추가 서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 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 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가정위탁자 (소년·소녀 가장)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가정위탁학생으로 등재된 자	가정위탁확인서 1부
조손 가정 자녀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 자녀	부 또는 모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 2, 3등급) 가정의 자녀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순직 공무원 자녀	순직한 군인·경찰·소방·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대상자	지원 자격	해당자별 추가 서류
다자녀 가정 자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발급자)	
공무원 자녀	경력 10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군복무확인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환경미화원 자녀	재직증명서 1부
	우편집배원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자녀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위 이하의 교정공무원 자녀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학교장 확인서 1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 원본대조필)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부(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공 통 서 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임)

○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 데도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며, 원서접수 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첨부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 :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금 :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됨

○ 지역가입자, 직장 및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60%, 보건복지부 : 2026. 1. 1. 시행)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103,000	148,138	79,647	-
2인	6,719,000	243,833	181,659	247,763
3인	8,575,000	309,777	264,935	318,043
4인	10,392,000	374,300	338,641	390,974
5인	12,091,000	457,613	435,046	490,306
6인	13,690,000	535,512	525,833	584,741
7인	15,225,000	584,741	579,249	634,432
8인	16,759,000	634,423	628,429	712,921
9인	18,294,000	712,921	697,282	838,330
10인	19,829,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시 유의사항 >

① 가구원 수 산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에 따름

-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한다.
 나.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의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5. 전형 시 유의점

- 가. 기회균등 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
- 나. 기회균등 전형 미충원 발생 시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할 수 있다.
- 다. 사회통합 전형 탈락자는 일반 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할 수 있다.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별도 전형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지원자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이 경우 사회통합 전형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 마. 사회통합 전형 실시 고등학교는 원서접수 및 면접 전형에 있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라는 개인 신상이 타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바. 입학전형(사회통합 전형 합격자 선발)과 고교 입학 후 실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 별개로 운영한다.

6. 부정 입학에 대한 조치

- 가. 사회통합 전형 실시 학교장은 부정 입학자 처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 나. 학교장은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증명서 위조나 불법, 편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합격 및 입학 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 다. 위와 관련하여 사회통합 전형 실시 학교장은 입학전형 응시원서에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의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학부모 확인서(붙임1 참고)를 첨부하도록 조치한다.

학 부 모 확 인 서

성명	지원학생		주민등록 번호	지원학생	-
	학부모			학부모	-
주 소					
학생 출신학교		() 중학교 ()년 월 (졸업/졸업예정)			
지원 유형		사회통합 전형 / 사회다양성 전형 / 다자녀 가정 자녀(예시)			

본인은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학생 성명 : (서 명)

학부모 성명 : (서 명)

○○고등학교장 귀하

※ 학교별로 변형하여 활용 가능

붙임2**[생계 곤란] 지원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예시]**

2027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지원을 위한

(생계 곤란) 지원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중학교용)

소속	중학교	학번	학년	반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 중학교 년 월 졸업예정 () 년 시행 중입/고입 자격 검정고시 합격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확 인 내 용

※ 부양의무자의 파산·폐업·중증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사유와 근거를 객관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붙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생계 곤란 사유 근거 증빙서류 1부.
3.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위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될 경우 입학 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명)

보호자 _____ (서명)

위 기재 사항을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확인한 결과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하며, 귀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직인)

○○ 교육장(직인)(검정고시 자격 소지자인 경우)

○○ 고등학교장 귀하

기타 전형

II 체육특기자 전형

1. 기본 방향

- 가. 2027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학교장전형 고등학교⁷⁾는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전형을 준용하여 학교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다. 학교별 체육영재육성(교기) 지정 종목(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종목에 한함)을 대상 종목으로 한다.
- 라.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이내로 한다.
- 마. 체육특기자는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바. 평준화지역 교육감전형 일반고등학교(이하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라 한다)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고, 학교장전형 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선발한다.
- 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하여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추천 체육특기자 전형에 내신 성적(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을 각 영역별 50% 반영한다.
- 아.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 수가 학교의 종목별 신입생 모집정원(인원 배정)을 초과할 경우 전형 영역별 점수의 상위자를 우선 선발한다.
 - 1) 축구, 야구 종목의 신입생 정원은 축구 15명 이하, 야구 15명 이하로 한다.
 - 2) 야구 종목은 모집 정원 범위 내에서 포지션별(투수, 포수, 야수) 성적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 인원은 포지션과 관계없이 탈락한 학생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027학년도부터 시행>

7) 학교장전형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와 평준화지역 학교장전형 학교 모두를 포함

2. 지원 자격

가.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1) 대회 범위

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그 시도 예선대회 포함)

나)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그 시도 예선대회 포함)

다) 시도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시도체육회와 공동 주최한 전국 또는 시도 규모의 대회

라)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에 한한다.

(1)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 대회

2) 입상 범위

가)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나)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무용 제외)

다) 도단위 리그 대회(축구, 야구)를 실시하는 종목은 5경기(여자는 3경기) 이상 출전한 자에 한함.

나. 추천 체육특기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는 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자

1) 신체 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교육부장관 및 대한체육회장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체육선수 육성 목적으로 유망신인으로 지정 통보한 자

3. 전형 영역별 점수 산출 방법

전형 영역	내신	실적	면접	계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100점(50%)	100점(50%)		200점(100%)
추천 체육특기자	100점(50%)		100점(50%)	200점(100%)

가. 내신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내신 성적으로 반영한다.

1) 배점과 비율

영역	반영 학기	총점	비율	석차 백분율
교과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160점	100%	%
출결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전체 결석일수 중 미인정 결석일수 기록			

2) 석차백분율에 따른 환산 점수

배점 구분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석 차 백분율	54이하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나. 실적 및 면접

1) 실적 배점표(축구, 야구 이외 종목)

구분	배점	100	90	80	70	60	50
경기 실적		전국단위 대회 1위	전국단위 대회 2위	전국단위 대회 3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1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2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3위

2) 실적 배점표(축구, 야구)

구분	배점	100	90	80	70	60	50	40	30
경기 실적		전국단위 대회1위	전국단위 대회2위	전국단위 대회3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1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2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3위	축구,야구 종목 7(5)경기 이상출전	축구,야구 종목 5~6(3~4) 경기출전

※ ()는 여자 축구 선수가 도 단위 대회 경기에 출전한 횟수임.

3) 면접(추천 체육특기자)

추천 체육특기자는 학생 신체능력검사(체력 검사), 체격 조건, 학생 의지, 발전 가능성을 면접 심사하여 합산 점수를 반영한다.

가) 면접 배점표

구분 \ 항목	우수	보통	미흡
체력검사	25	20	15
체격조건	25	20	15
학생의지	25	20	15
발전가능성	25	20	15

(1) 체력 검사

평가 기준	점수
체력검사 판정 급수 1급	25
체력검사 판정 급수 2급	20
체력검사 판정 급수 3급 이하	15

(2) 체격 조건

평가 기준	점수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는 체격조건으로 매우 우수	25
해당 종목의 특성에는 적합하나 체격조건은 보통	20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지 않고 체격조건이 미흡	15

(3) 학생 의지

평가 기준	점수
해당 종목에 대하여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뛰어남	25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나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함	20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심이 떨어지며 자세가 소극적임	15

(4) 발전 가능성

평가 기준	점수
해당 종목을 잘 이해하고 의욕적이며 성실하게 참여하고자 함	25
해당 종목을 이해하나 의욕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보통임	20
해당 종목의 이해가 부족하고 성실성이 떨어짐	15

4. 심사원서 제출 방법

가. 영역별 필요 서류

1)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가)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 [체육특기자 서식 1]

나) 증빙서류

(1) 개인 경기인 경우 : 상장 사본 (원본대조필-해당 학교장)

(2) 단체 경기인 경우 : 상장 사본 뒷면에 엔트리 명단 기입 후, 해당 경기 단체장이 확인한다. (원본대조필-해당 학교장)

※ 골프와 무용은 배정희망 학교장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석차연명부(내신석차 백분율(총점)기록 / 학교장 직인 날인) 또는 내신성적 통지표

※ 해당 학생 부분만 출력 제출

2) 추천 체육특기자

가) 추천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 2]

나) 배정희망 학교장 동의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 3]

다) 재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 4]

라) 석차연명부(내신석차 백분율(총점)기록 / 학교장 직인 날인) 또는 내신성적 통지표

※ 해당 학생 부분만 출력 제출

나. 심사원서 제출

-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추천 체육특기자) 지원자는 본 전형 및 체육예술건강과의 공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원서를 제출한다.

가) 제출처 및 제출 기간

(1) 중학교 → 교육지원청(중학교 소재지) : 2026. 9. 28.(월) ~ 9. 30.(수)

- 시행문 전자문서로 접수대장, 심사원서 및 증빙서류는 인편 제출 후 확인
(학교장전형 고등학교 지원자는 해당 고등학교의 전형 일정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제출)

(2) 교육지원청(중학교 소재지) →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2026. 10. 19.(월) ~ 10. 22.(목)

- 시행문 전자문서로 접수대장, 심사원서 및 증빙서류는 인편 제출 후 확인

나) 서류 제출 장소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지원자 : 중학교→교육지원청(중학교 소재지)→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2) 학교장전형 고등학교 지원자 : 중학교→해당 고등학교

2)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의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의 심사원서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는 해당 학교의 고입전형 계획에 따른다.

5. 지원 및 전형 방법

가. 체육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나.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지원자는 희망하는 학교 순으로 3희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희망 학교에 불합격한 경우 2희망, 3희망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

다.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체육특기자 확인서를 교부받아 입학원서에 체육특기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며, 그 외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전형 합격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원서(체육특기자 확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자는 반드시 전형(선발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마.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 로 선발한다.

바. 학교의 종목별 지원자 수가 종목별 신입생 모집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실적체육특기자를 추천체육특기자 보다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형 영역별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석차백분율 환산 점수가 높은 학생

2순위 : 입상실적(면접점수)이 높은 학생

3순위 : 미인정 결석일수가 적은 학생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

6.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설치

가.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배정
- 2)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추천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배정

나. 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장전형 고등학교)

- 학교별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및 추천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다. 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구비 서류

- 1) 입상실적(추천) 체육특기자 접수대장
- 2) 입상실적(추천) 체육특기자 선발 심의 대장
- 3)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회의록

재적교 학교장 추천서

1. 소 속	
2. 학 반	
3. 성 명	(한자 :)
4.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학생은 운동선수로서 신체조건과 소질이 뛰어나
 배정 희망교의()부 체육특기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중학교장(직인)

경상남도체육특기자심사위원장 귀하

기타 전형

III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진학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1. 신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선정과 배치를 함께 신청함)

가. 신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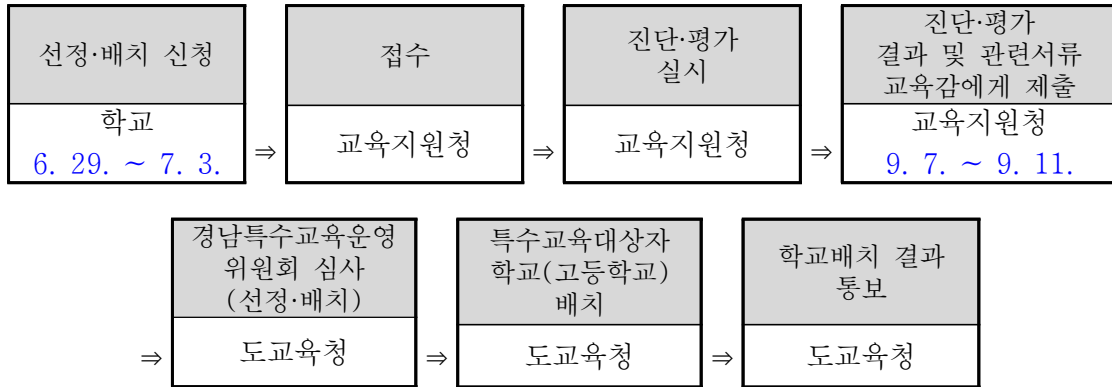
-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202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자
- 2) 건강장애 학생 중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 건강장애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시 진단평가 재실시)

나. 제출 서류(건강장애 포함)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1부
- 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보호자용) 1부
- 4)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담임교사용) 1부
- 5) 학습장애 선정·배치 희망자는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학습장애) 1부
- 6)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1부
- 7)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 8)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0) 건강장애 선정·배치 희망자는 의사진단서 1부

다. 제출 시기 : 2026. 6. 29.(월) ~ 2026. 7. 3.(금)

라. 업무추진 절차



마. 제출처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 기존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배치만 신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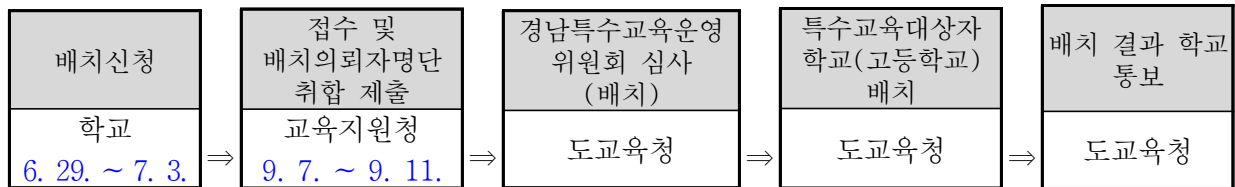
가. 신청 대상 :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나. 제출서류

- 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뢰자 명단 1부
-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 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또는 배치 결과 통지 공문 사본 1부

다. 제출 시기 : 2026. 6. 29.(월) ~ 2026. 7. 3.(금)

라. 업무처리 절차



마. 제출처 : 해당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가. 주요 업무

- 1) 신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 2) 진단평가 결과 및 관련 서류 취합

나. 제출 서류 : 생략(6월 중 공문을 통해 알림)

다. 제출 시기 : 2026. 9. 7.(월) ~ 2026. 9. 11.(금)

라. 제출처 :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마. 제출 방법 : K-에듀파인,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바. 기타 안내 사항

- 거주지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원거리 특수학교(급) 배치 사례 방지
-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 이전 없이 원거리 특수학교(급)로 전학하는 사례 방지
- 중학교 과정의 건강장애 학생 중 출석에 문제가 없는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시 건강장애 선정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일반전형으로 고등학교 진학 준비 당부
-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진학 신청 시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고등학교 배치가 완료된 후에 배치 변경 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신청할 것
-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입학원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배치공문으로 갈음)
- 특수학생이 배치된 고등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에 원서를 작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학교

순번	배치희망학교									재학학교		성명	성별	도로명주소	생년월일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장애영역	연락처		복지카드		의료적 처치 (편의 제공)	비고
	1희망			2희망			3희망			재학학교명	학년						보호자명 (연락처)	담당 교사명 (연락처)	영역	등급 (정도)		
	희망학교명	배치유형	거리	희망학교명	배치유형	거리	희망학교명	배치유형	거리													
예시	OO고등학교	일반학급	0km	△△고등학교	일반학급	0km	□□□□학교	특수학교	0km	OO중학교	3	홍길동	남	OO시 OO로 0길 0	2000-00-00	지적장애			지적장애	심한	휠체어	

-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00유치원, 00초등학교, 00중학교, 00고등학교, 0000학교’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
- ※ 희망 학교명에 1희망, 2희망, 3희망 필히 모두 기재(거주지 가까운 학교를 신청)
- ※ 배치유형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순회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교(순회교육)’ 등으로 표시)
- ※ 거리는 ‘학교와 거주지와의 거리’ 를 뜻하며, 정확하게 기재(포털사이트 지도의 자동차 거리 기준)
- ※ 생년월일은 ‘0000-00-00’ 로 표기
- ※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장애영역’ 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장애영역을 참조
- ※ 복지카드 미소지 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장애영역’ 만 표기
- ※ 의료적 처치(편의제공)란은 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편의제공이나 특이사항을 간략히 기재
- ※ 지역교육지원청 진단평가위원회에서 배치 검토한 학교를 음영색 표시(지역청에서 배치 검토한 학교와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한 결정이 다를 수 있음)
- ※ 의뢰자 명단은 지역교육지원청별 관내 학생 전체 의뢰자를 취합하여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보호자용)				
대상자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소속	학교 제 학년		
기초자료내용	장애등록 현황	<input type="checkbox"/> 등록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앞면, 뒷면 필수 첨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선정) 영역 (중복선택 안됨)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건강장애 <input type="checkbox"/> 발달지체(만9세미만)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학습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서·행동장애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장애	선정 영역 변경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이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1회, 2회, 3회 이상)		
	심리평가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 1년 이내 실시한 심리평가 기재(지능검사의 경우 검사도구 정확히 기재) (검사기관: 검사일자: 실시검사:)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치료·교육 이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치료(교육)영역: <input type="checkbox"/> 없음 치료(교육)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약물 복용 이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복용약물(용량): , 복용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강상태 및 행동특성	발육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지금 치료 중인 질병(병원 등),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특이체질, 건강상태 및 행동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기초 학습 수행 능력	국어 (언어)		
		수학 (수개념)		
	사회생활 적응능력	또래관계나 신변자립기술 등에 대해 기재		
	다문화	다문화 가정 등 특이사항 기재 다문화 지원 관련 사전 증제		
	배치유형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선정) 사유	특수교육대상자로 의뢰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담임교사용)				
대상자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소속	학교 제 학년 유치원 만 세		
기초자료	※ 해당란 작성	교육지원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기초학력프로그램 (두드림, 학습종합클리닉 등)	프로그램명: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총 00회)
			상담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기관명: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총 00회)
			보조공학기기	
내용	기초 학습 수행 능력	다문화 가정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다문화중재프로그램 (한국어학급, 한국어교육 등) 프로그램명: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총 00회)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진단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개인 내외적 요인에 대해 기재(약물복용, 심리치료, 가족특성 등)	
내용	국어 (언어)			
	수학 (수계)			
	사회생활 적응능력	또래관계나 신변자립기술 등에 대해 기재		
내용	정서 및 행동특성	일반 학생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교사의 유의가 필요한 행동특성 또는 부적응 행동을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교사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대상자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소속	학교 제 학년						
기초자료내용	장애등록 현황	<input type="checkbox"/> 등록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앞면, 뒷면 필수 첨부						
	병명 및 특성	특성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정 특례인 경우 산정특례 기간 기재)						
	의사 진단서 요약 ※ 3개월 이내 발급	출 결 사 항	연도	수업 일수	학교출석 일수	미등교일수 (원격수업일수)		
			2026			()		
			2025			()		
			2024			()		
	예상치료 기간		희망수업 지원영역	<input type="checkbox"/> 병원학교입급 <input type="checkbox"/> 원격수업신청				
	학교생활 모습							
보호자 의견	보호자						(인)	
담임교사 의견	교사						(인)	
년 월 일 학교장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 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 건강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 ※ 유의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학업에 문제가 있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
(예 : 심장병으로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해야 하나 학업에는 지장이 없을 경우 대상자가 아님)
 - ※ 출결사항: 학교출석일수에는 실제 등교일 기재, 미등교일수에는 실제 미등교일 기재, 단 (괄호)안에는 원격수업일수를 정확히 기재

학교장 의견서							
학생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학년	
의사소통 능력				행동특성			
일상생활 능력							
기초학습 수행능력	국 어			수 학			
종합의견							
년 월 일							
						학교장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속 학교명	학생 성명	생년월일
---------------	--------------	-------------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OO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1항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등에 필요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를 알려드립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정 및 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진단·평가 결과 및 통지서, 학교배치 결과통지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 등)는 보안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에 탑재(DB)하여 관리를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1.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배치(재배치, 유예, 면제 등 포함)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통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학생 학생 인적사항 및 재학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교, 학반, 출결, 주소 ▷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가족구분, 연락처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정·배치	동의서 제공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안함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보유기간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등에 관련한 사항: 장애인 등록사항, 학업성취수준, 행동특성 및 요인, 발육 및 건강상태, 사회생활적응능력, 의사소통능력, 병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현황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정·배치	동의서 제공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유초중고·특수 학교 재학 기간	동의서 제공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 기간

위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안함

사전동의 구비서류 정보: 주민등록표 등본

위 사전동의 구비서류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안함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 경상남도 관내 학교, 타시도교육청(타시도 전출 시)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정·배치	▷ 학생 인적사항 및 재학사항 ▷ 보호자 인적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등에 관련한 사항	동의서 제공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리교육청(타시도 교육청간 포함)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안함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기타 전형

IV 특례입학 전형

1. 목적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의 근거로 활용되어 온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 고시 제2022-37호)이 폐지 및 존속기간 만료(2023. 12. 31.)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 특례 요건 및 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학교 및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학교·교원정책연구실-848, 2024. 2. 1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 기준 및 절차) 제4조(입학 등의 지원)
-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폐지(2023. 12. 31.)

3. 용어의 정의

특례입학 전형	외국에서 장기간 수학한 학생 또는 외국인 등이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겪게 되는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전형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또는 재학,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체류 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 또는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 일수를 제외한 기간
재학 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영사 확인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 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 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 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4. 특례입학 대상자 및 자격 요건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해당자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 적용사항

-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 국내 중학교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1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국내 중학교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1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서식 1】
	○ 외국학교 전(全) 학년 재학(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외국학교 전(全) 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탭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모, 학생)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 귀국 일자 이후 발행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 통일부, 해당 행정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학력 확인서	
	○ 교육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 증명서	○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평준화)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 안내' 참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해당자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적용사항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학교에 2년 이상 재학

- 재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의 기간이 필요(초등학교 1~3학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
-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2개월 이내)는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7~9학년)의 일부를 이수(1학기 이상)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 부모의 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부모 모두 각각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 인정)

구 분	거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재학기간 동시 적용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서식 1】
외국학교 전(全) 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全) 학년의 재학 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에**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 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 일자 이후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둘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 사본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에 한함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 목록 안내' 참조

*** '여권에 날인된 한국과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 **특례 요건 미충족 사례**

- 학생의 어머니는 국내에 거주, 학생은 학생의 아버지와 해외에서 거주
⇒ 부모 중 한쪽만 해외 거주
- 외국에서 2~4학년, 7학년 과정을 이수 후 국내 중학교 편입한 학생
⇒ 불연속 3년 미만 재학(초등학교 1~3학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외국에서 4~6학년을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로 편입
⇒ 외국의 중학교 과정(7학년) 미이수
- □□□ □□□□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각각 1년 6월 및 **10월**인 경우
⇒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유형 2- 나. 정부의 초청(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 적용사항

-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학교 재학 기간, 외국 거주(체류) 기간 연한 미적용
 -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7~9학년)의 일부를 이수(1학기 이상)**
 -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서식 1】
외국학교 전(全) 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全) 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탐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누리집 미 탐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 기관임을 소명(관할교 육청의 학력 인정 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 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부·모·학생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 일자 이후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둘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증빙자료 제출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 학교 목록 안내' 참조

※ **특례 요건 미충족 사례**

-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님

유형 2-다. 외국인 학생

▣ 적용사항

▣ 외국인 학생으로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 확인
- 학생 성명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 공증을 받은 경우 번역된 성명 기재
-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7~9학년)의 일부를 이수(1학기 이상)**
- 이중(복수) 국적을 가진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는 경우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번역 공증 제출)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서식 1】
외국학교 전(全) 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외국학교 전(全) 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탐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 서류와 확인서 제출 -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 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 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외국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국내거소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한국계 외국인)만 발급, 가족사항이 표기된 증명서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모와 학생 모두 제출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학생만 제출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 학교 목록 안내' 참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해당자

유형 3. 북한이탈학생

▶ 적용사항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한 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해야 함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서식 1】
학력 확인서	○ 통일부, 해당 행정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 일자 이후 발행 ○ 부모가 둘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해당자

유형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적용사항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
 -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서식 1】
학력 인정 증명서	○ 경상남도교육청(진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발급
학력 확인서	○ 시·군·구청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부, 모, 학생)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 부모가 둘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5. 외국의 학교 과정 인정 기준 및 범위

가. 외국의 학교 인정 범위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 제2언어로서의 영어),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정규 학교의 학력만 인정)

나. 외국의 학교 과정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다.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인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 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라.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마. 초·중·고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기준

※ 외국학제의 국내학력 인정(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초등의 경우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중학교의 경우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중학교의 경우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 당해국 학년제의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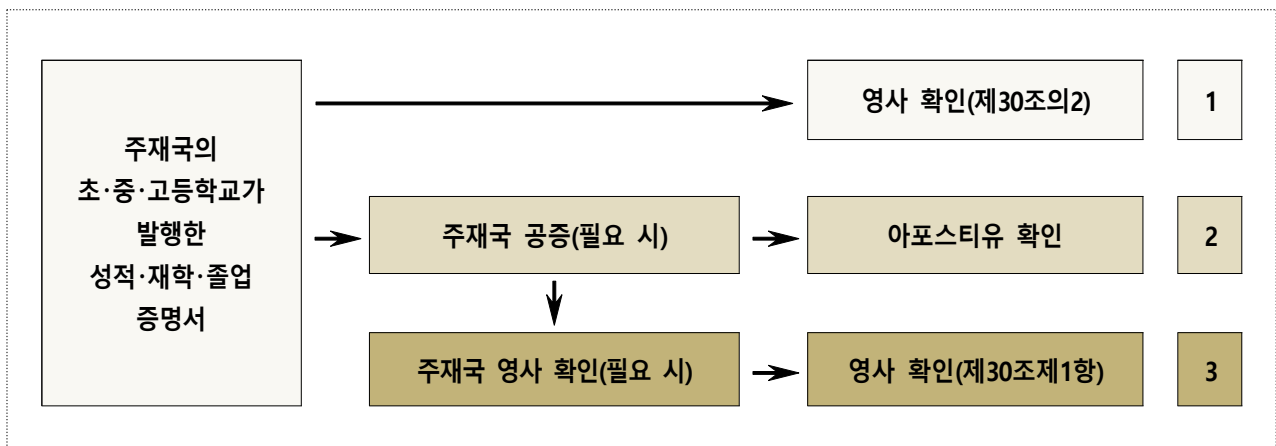
【 외국의 학제(예시) 】

국가명	학 제												총수학 기 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한민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년
북 한	인민1	인민2	인민3	인민4	고등중1	고등중2	고등중3	고등중4	고등중5	고등중6			10년
미 국	1	2	3	4	5	6	7	8	고1 9	고2 10	고3 11	고4 12	12년
필 리 핀	1	2	3	4	5	6	7	고1	고2	고3	고4		11년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초급1	초급2	초급3	상급1	상급2		11년
브 라 질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러 시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F6.7	13년
호 주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바. 외국 공문서 국내 사용법

-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는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학적 서류 국내 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6.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가. 외국 거주·체류·재학 기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분	거주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외국학교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기간 산정 기준

구분	산정 기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귀국자의 특례입학 관련 재학 기간에 따른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예시)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 아님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 인정(유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학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7. 특례입학 처리

▣ 특례입학의 적용

가. 특례입학 종류별 인정 범위

구분	특례입학 인정 범위
외국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자	○ 국내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 전·편입학 ○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외국 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나. 특례입학 허용 기한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특례 신입학 예정자	외국 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6학년 1학기 초)로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로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로부터 3년 6개월 이내 (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다. 특례입학 효력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 1회 특례 인정
특례 신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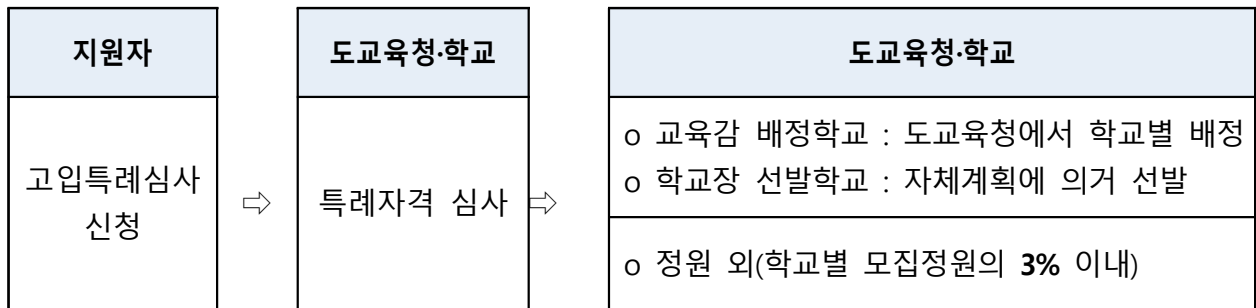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위 특례입학 허용 기한 및 효력에 관계없이 특례입학 가능

8. 특례입학의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 경상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상 주소지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학교별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배정(지원자가 정원의 3%를 넘길 시 내신성적 석차백분율로 선발)
-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입학자격 심사 후 학교별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선발

나. 절차



9. 특례유형별 구비 서류

가. 특례입학 신청서 : <서식 1>

나. 귀국가 특례입학 구비서류

구비서류	해당자별 제82조 3항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 가목)	과학기술 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제2호 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제82조 3항 제4호	정원 내 입학자 (일반전· 편입학 자)	비 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 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초)학년 성적 증명서, 졸업(재 학) 증명서	○	○	○	○	○			○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 티유 인증
유학 전, 국내 최종학 교 재학(졸업 등)증명서		(○)	(○)					(○) (학생)	가까운 초·중·고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민원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별첨 서식2)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민원24 홈페이지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 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부, 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 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교육보호(지원) 대상 자 증명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인정 증명서	(○)						○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제1호 해당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졸업(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4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심의위원회 인정서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붙임 2 참조)
-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서식 1-1 평준화지역 일반고용>

2027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지원자	이름	(한글)		성별	생년 월일		
		(영문)					
	주소						
	학교	()중학교 제 학년 반 번					
보호자	이름		관계		휴대폰		
					휴대폰		
희망 학교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지원유형 (해당자에 √)	<input type="checkbox"/> 유형1 <input type="checkbox"/> 유형2-가 <input type="checkbox"/> 유형2-나 <input type="checkbox"/> 유형2-다 <input type="checkbox"/> 유형3 <input type="checkbox"/> 유형4						
지 원 자 학 력	국내 학력	년 월 일	초등학교 ()학년 의무교육 면제				
		년 월 일	중학교 ()학년으로 (취학·재취학)				
외 국 학 력	국가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외국 재학학년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		
	외국 학력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유형 2-가, 나, 다 해당자만 작성							
국외체류 거주기간	구분	출국일자	입국일자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본인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부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모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p>본인은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첨부 서류 : 특례입학 대상자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 생 성 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보호자 성 명 이도경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증빙 서류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중 학 교 장 (직인)</p>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1-2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용>

2027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지원자	이름	(한글)	성별		생년 월일	
		(영문)				
	주소					
	학교	()중학교 제 학년 반 번				
보호자	이름		관계		휴대폰	
					휴대폰	
지원유형 (해당자에 √)		<input type="checkbox"/> 유형1 <input type="checkbox"/> 유형2-가 <input type="checkbox"/> 유형2-나 <input type="checkbox"/> 유형2-다 <input type="checkbox"/> 유형3 <input type="checkbox"/> 유형4				
지 원 자 학 력	국내 학력	년 월 일	초등학교 ()학년 의무교육 면제			
		년 월 일	중학교 ()학년으로 (취학·재취학)			
외 국 학 력	국가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외국 재학학년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
	외국 학력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유형 2-가, 나, 다 해당자만 작성						
국외체류 거주기간	구분	출국일자	입국일자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본인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일
	부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일
	모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일
<p>본인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첨부 서류 : 특례입학 대상자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학 생 성 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성 명 이도경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증빙 서류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중 학 교 장 (직인)</p> <p>○○ 고등학교장 귀하</p>						

<서식 2>

국내 거주 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성 명 : (한자 : 영문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성별 :

위 학생은 재()동포 부(), 모()의 자녀로서 모국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 소 :

신 청 인 성명 :

학생과의 관계 :

년 월 일

확인자 ()동 ()통장 성 명 (인)

()동 ()통 ()반장 성 명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관련 안내

- ☐ 아포스티유 협약은,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07.7.14)



<기존의 영사 확인 방식>



<아포스티유 확인 방식>

☐ 아포스티유 발급 및 제출

- 해외 학교의 공문서(성적증명서 등) 발급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 부착) ⇒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행정 사항

구비서류 심사 시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u>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주민등록등본(귀국 일자 이후 발행된 것) <p>※ <u>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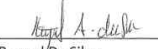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129개국)

(2025. 3. 30. 기준)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1	ㄱ	가이아나	44	ㄴ	벨기에	87	ㅇ	오스트레일리아	
2		과테말라	45		벨라루스	88		오스트리아	
3		그레나다	46		벨리즈	89		온두라스	
4		그리스	4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0		우루과이	
5	ㄴ	나미비아	48		보츠와나	91		우즈베키스탄	
6		남아프리카 공화국	49		볼리비아	92		우크라이나	
7		네덜란드	50		불가리아	93		이탈리아	
8		노르웨이	51		브라질	94		이스라엘	
9		뉴질랜드	52		브루나이	95		인도	
10		니우에 섬	53		브룬디	96		인도네시아	
11	니카라과	54	북마케도니아		97	일본			
12	ㄷ	대한민국	55	ㄷ	사모아	98	ㅈ	조지아/그루지아	
13		덴마크	56		사우디아라비아	99		자메이카	
14		도미니카 공화국	57		사이프러스/키프로스	100	ㅊ	중국	
15		도미니카	58		산마리노	101		체코	
16	독일	59	상투메프린시페		102	칠레			
17	ㄹ	라이베리아	60		세네갈	103	ㅋ	카보베르데	
18		라트비아	61		세르비아	104		카자흐스탄	
19		러시아	62		세이셸	105		캐나다	
20		레소토	63		세인트루시아	106		코소보	
21		루마니아	64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07		코스타리카	
22		룩셈부르크	65	세인트키츠네비스	108	콜롬비아			
23		리투아니아	66	수리남	109	쿡제도			
24		리히텐슈타인	67	스와질랜드	110	크로아티아			
25		르완다	68	스웨덴	111	키르기스스탄			
26	ㅁ	마셜제도	69	스위스	112	ㅌ	타지키스탄		
27		마카오	70	스페인	113		튀르키예		
28		말라위	71	슬로바키아	114		통가		
29		멕시코	72	슬로베니아	115		튀니지		
30		모나코	73	싱가포르	116		트리니다드토바고		
31		ㅂ	모로코	74	ㅇ	아르메니아	117	ㅍ	파나마
32			모리셔스	75		아르헨티나	118		파라과이
33			몬테네그로	76		아이슬란드	119		파키스탄
34			몰도바	77		아일랜드	120		팔라우
35			몰타	78		아제르바이잔	121		페루
36	몽골		79	안도라		122	포르투갈		
37	미국		80	알바니아		123	폴란드		
38	ㄷ	바누아투	81	앤티가바부다		124	ㅎ	프랑스	
39		바레인	82	에스토니아		125		피지	
40		바베이도스	83	에콰도르		126		핀란드	
41		바하마	84	엘살바도르	127	필리핀			
42		방글라데시	85	영국	128	헝가리			
43		베네수엘라	86	오만	129	홍콩			

※ 재외동포청(<https://www.oka.go.kr/>) - 재외동포 지원서비스 - 민원업무 안내 -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붙임 2>

<p>영사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37호 서식)</p>	<p>재학증명서</p>	<p>성적증명서</p>																																																																																																												
<p>(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p> <p>(별지 제37호서식)</p> <p>등부 2012년 제 174호 Registered No. 2012 - 1543</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 서 LETTER OF CONFIRM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ão Paulo, Brasil</p> <p style="text-align: right;">2012. 08. 10 인 원본대조됨</p>	<p>(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p> <p>서류 앞 뒷면 영사관 직인으로 간인 처리</p> <p>영사관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EAC Escola Americana de Campinas</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June 21, 2012</p> <p style="text-align: center;">영사관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Certificate of Enrollment</p> <p>Student Name: [Redacted] Date of Birth: [Redacted]</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student above was enrolled in EAC (Escola Americana de Campinas) from August 5th 2008 to June 21st 2012, attending grades as below:</p> <p>Aug. 2008 - Jun. 2009: 5th grade Aug. 2009 - Jun. 2010: 6th grade Aug. 2010 - Jun. 2011: 7th grade Aug. 2011 - Jun. 2012: 8th grade</p> <p style="text-align: center;"> Raquel Da Silva Middle School Counselor</p> <p style="text-align: right;">2012. 08. 10 인 원본대조됨</p>	<p>(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MIDDLE SCHOOL RECORD - TRANS</p> <p>STUDENT INFORMATION SCHOOL INFORMATION</p> <p>Home Address: [Redacted] City: [Redacted] State: SP</p> <p>Parent or Guardian: [Redacted] ZIP: [Redacted]</p> <p>Date of Birth: [Redacted]</p> <p>Grade Level: A-05-10 B-02-01 C-12-01 D-02-71 F-0-01</p> <p>Date entered: Aug. 05/2008 Date left: Jan. 17/2012</p> <p style="text-align: center;">영사관 직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Subject</th> <th>1st Sem</th> <th>2nd Sem</th> </tr> </thead> <tbody> <tr><td>English Sec. Lang.</td><td>B</td><td>B</td></tr> <tr><td>Portuguese Sec. Lang.</td><td>B</td><td>B</td></tr> <tr><td>English</td><td>B</td><td>B</td></tr> <tr><td>Science</td><td>A</td><td>A</td></tr> <tr><td>Health</td><td>A</td><td>A</td></tr> <tr><td>Computer</td><td>B</td><td>B</td></tr> <tr><td>History</td><td>A</td><td>A</td></tr> <tr><td>Geography</td><td>A</td><td>B+</td></tr> <tr><td>Math</td><td>A</td><td>A</td></tr> <tr><td>Phy. Ed.</td><td>A</td><td>A</td></tr> <tr><td>Art</td><td>A</td><td>A</td></tr> <tr><td>Personalities</td><td>C+</td><td>A</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Grade 7 2010 to 2011</p> <table border="1"> <thead> <tr> <th>Subject</th> <th>1st Sem</th> <th>2nd Sem</th> </tr> </thead> <tbody> <tr><td>English</td><td>B</td><td>B</td></tr> <tr><td>Portuguese Sec. Language</td><td>A</td><td>A</td></tr> <tr><td>Social Studies</td><td>A</td><td>A</td></tr> <tr><td>Health</td><td>B</td><td>A</td></tr> <tr><td>Science</td><td>A</td><td>A</td></tr> <tr><td>Mathematics</td><td>A</td><td>B+</td></tr> <tr><td>Computer</td><td>A</td><td>A</td></tr> <tr><td>Character Ed.</td><td>A</td><td>A</td></tr> <tr><td>Mixing Workshop</td><td>A</td><td>A</td></tr> <tr><td>Art</td><td>A</td><td>A</td></tr> <tr><td>Phy. Ed.</td><td>B</td><td>B+</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Grade 8 2011 to 2012</p> <table border="1"> <thead> <tr> <th>Subject</th> <th>1st Sem</th> <th>2nd Sem</th> </tr> </thead> <tbody> <tr><td>English</td><td>B</td><td>B</td></tr> <tr><td>Portuguese Sec. Lang.</td><td>B</td><td>B</td></tr> <tr><td>Social Studies</td><td>B</td><td>B</td></tr> <tr><td>Mathematics</td><td>B</td><td>B</td></tr> <tr><td>Science</td><td>B</td><td>B</td></tr> <tr><td>Health</td><td>B</td><td>B</td></tr> <tr><td>Computer</td><td>B</td><td>B</td></tr> <tr><td>Music</td><td>B</td><td>B</td></tr> <tr><td>Phy. Ed.</td><td>B</td><td>B</td></tr> <tr><td>Art</td><td>B</td><td>B</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romoted to 9th Grade</p> <p style="text-align: center;">June 20th, 2012  Date Signature</p> <p style="text-align: right;">2012. 08. 10 인 원본대조됨</p> <p style="text-align: right;">Middle School Counselor Title</p>	Subject	1st Sem	2nd Sem	English Sec. Lang.	B	B	Portuguese Sec. Lang.	B	B	English	B	B	Science	A	A	Health	A	A	Computer	B	B	History	A	A	Geography	A	B+	Math	A	A	Phy. Ed.	A	A	Art	A	A	Personalities	C+	A	Subject	1st Sem	2nd Sem	English	B	B	Portuguese Sec. Language	A	A	Social Studies	A	A	Health	B	A	Science	A	A	Mathematics	A	B+	Computer	A	A	Character Ed.	A	A	Mixing Workshop	A	A	Art	A	A	Phy. Ed.	B	B+	Subject	1st Sem	2nd Sem	English	B	B	Portuguese Sec. Lang.	B	B	Social Studies	B	B	Mathematics	B	B	Science	B	B	Health	B	B	Computer	B	B	Music	B	B	Phy. Ed.	B	B	Art	B	B
Subject	1st Sem	2nd Sem																																																																																																												
English Sec. Lang.	B	B																																																																																																												
Portuguese Sec. Lang.	B	B																																																																																																												
English	B	B																																																																																																												
Science	A	A																																																																																																												
Health	A	A																																																																																																												
Computer	B	B																																																																																																												
History	A	A																																																																																																												
Geography	A	B+																																																																																																												
Math	A	A																																																																																																												
Phy. Ed.	A	A																																																																																																												
Art	A	A																																																																																																												
Personalities	C+	A																																																																																																												
Subject	1st Sem	2nd Sem																																																																																																												
English	B	B																																																																																																												
Portuguese Sec. Language	A	A																																																																																																												
Social Studies	A	A																																																																																																												
Health	B	A																																																																																																												
Science	A	A																																																																																																												
Mathematics	A	B+																																																																																																												
Computer	A	A																																																																																																												
Character Ed.	A	A																																																																																																												
Mixing Workshop	A	A																																																																																																												
Art	A	A																																																																																																												
Phy. Ed.	B	B+																																																																																																												
Subject	1st Sem	2nd Sem																																																																																																												
English	B	B																																																																																																												
Portuguese Sec. Lang.	B	B																																																																																																												
Social Studies	B	B																																																																																																												
Mathematics	B	B																																																																																																												
Science	B	B																																																																																																												
Health	B	B																																																																																																												
Computer	B	B																																																																																																												
Music	B	B																																																																																																												
Phy. Ed.	B	B																																																																																																												
Art	B	B																																																																																																												
<p>확인서 겹표지(법정 양식)</p>	<p>(속지) 1 ⇒ 2008.8.5. ~ 2012.6.21. 재학 증명서</p>	<p>(속지)2 ⇒ 6학년~8학년 성적증명서(2009년~2012년)</p>																																																																																																												

<p>영사 확인</p>	<p>아포스티유 확인 [영사 확인(2가지 유형)외에 학적서류 국내 사용]</p>	<p>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영사 확인) 두 번째 방법</p> </div>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10px;"> 서류 빈자리에 영사관 확인 도장을 찍고 직인 날인으로 마무리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영사관 확인 도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직인</p> </div>		<p>[별지 제13호서식]</p> <p>발행번호 Serial No. [redacted] 쪽수(Page) : 1/1</p> <p>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성명 Name</td> <td colspan="3">[redacted]</td> </tr> <tr> <td>성별 Gender</td> <td>여 (F)</td> <td>생년월일 Date of Birth</td> <td>[redacted]</td> </tr> <tr> <td>국적 Nationality</td> <td>한 국 KOREA</td> <td>여권번호 Passport No.</td> <td>[redacte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td> </tr> <tr> <td>출국 Exit</td> <td>입국 Entry</td> <td>출국 Exit</td> <td>입국 Entry</td> </tr> <tr> <td>2007.08.01</td> <td>2007.08.09</td> <td>2009.08.12</td> <td>2010.07.17</td> </tr> <tr> <td>2010.07.28</td> <td>2010.12.22</td> <td>2010.12.31</td> <td>2011.01.29</td> </tr> <tr> <td>2011.02.07</td> <td>2011.06.18</td> <td>2011.08.09</td> <td>2012.01.08</td> </tr> <tr> <td>2012.08.10</td> <td>2013.02.25</td> <td>이하빈칸(The End)</td> <td></td> </tr> </table> <p>「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Clause 1 of Article 88 of the 1980 Law.</p> <p>발급일 Date of Issue 2013.02.25. 인원공행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p> <p>담당자 (Officer in charge) : [redacted] 수수료: 1,000원 연락처 (Tel.) : [redacted] Fee ₩</p> <p>본 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www.immigration.go.kr의 자료실에 있는 검증프로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You may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with the verification program on the website at www.immigration.go.kr</p>	성명 Name	[redacted]			성별 Gender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redacted]	국적 Nationality	한 국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redacted]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2007.08.01	2007.08.09	2009.08.12	2010.07.17	2010.07.28	2010.12.22	2010.12.31	2011.01.29	2011.02.07	2011.06.18	2011.08.09	2012.01.08	2012.08.10	2013.02.25	이하빈칸(The End)	
성명 Name	[redacted]																																					
성별 Gender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redacted]																																			
국적 Nationality	한 국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redacted]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2007.08.01	2007.08.09	2009.08.12	2010.07.17																																			
2010.07.28	2010.12.22	2010.12.31	2011.01.29																																			
2011.02.07	2011.06.18	2011.08.09	2012.01.08																																			
2012.08.10	2013.02.25	이하빈칸(The End)																																				
<p>재학증명서 (2011.9~2012.7)</p>	<p>아포스티유 협약에 부속된 양식 (1. 국가명 ~ 10. 서명)</p>	<p>체류기간 확인 가능</p>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Fax From : 06-98-13 06:16 Pg : 2

별지 제7호의2 서식, 2011.8.19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ION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발행번호 Number	<원 신고자>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국내거소신고번호 Report Number		국내거소신고일 Date of Report	2013.07.23
성명 Name		성별 Gender	남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미국
본인이 신고한 주소의 주민등록번호 Expire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체류기간 Period of Stay	
이전의 외국인등록번호 Expired Alien Registration Number	구 거소신고번호 :		

변경일 Date Of Alteration	국내거소 Residence In Korea	신고일 Date Of Report	비고 Remarks
2011.			
2013.		2013.07.17	
3	"이 하 빈 칸"		
4			
5			

관계 Relation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국내거소신고번호 Report Number
1	"이 하 빈 칸"		
2			
3			

본 가족사항은 거소신고가 허가 되는 통거가족을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7 of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발급일
Date of Issue: 2013. 08. 07.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도심공항출장소장
 Chief, City Air Terminal Branch
 수수료(Fee): 1,000원(₩)
 담당자(Officer in charge) 이권주

재외동포 자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증명번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성명 (한글)		3. 성별	남
(영문)			
2. 생년월일			
4. 주민등록번호			
5.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가 있는 경우)			
6. 병역관계			
7.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			USA (복수국적자)
8. 체류목적 및 자격	일반		가족체재
9. 최초입국일 (귀국예정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최초입국일:		(귀국예정일:)
10. 여권번호 및 그 밖의 사항	외국인등록번호: 미국 시민권자 용 노: 외교계출용		
11. 등록공관 및 등록일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2013/08/26

위의 내용이 재외국민등록부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08월 27일
 외교부장관인
 원본대조필

최초 입국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산정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별지 제139호서식]

발행번호
Serial No. <원 체류자> 처리기간
즉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성명 Name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동반(F-3)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2014.03.05
등록일자 Date of Registration	2013.04.16	등록체류지 Address	
이전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Expired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변경일자 Date	주소 Address	비고 Remarks
2013.		"이 하 빈 칸"

관계 Relations	성명 Name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배우자				
자녀				
자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음장 계속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Clause 2 of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발급일
DATE OF ISSUE: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Seoul Immigration Office
 수수료: 1,000원
 FEE: 1,000원
 연락처(Tel.): 1345

가족관계와 외국인 등록 여부 확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 13-131 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국일	보호결정일

상기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08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학력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학 력 확 인 서

제 13-29 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국일	보호결정일

이수학년	시작일	종료일	학 교	학 년	과 목
2003	2003	2005	인민학교	4년 졸업	-
2005	2005	2009	고등중학교	2년 중퇴	-
2009	2009	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

2013년 08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수수료 없음

교육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28.>

보호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국일	보호번호
	주소				

교육지원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대상자와 관계	[] 본인 [] 자녀

비고
(후학, 동학, 장애기간 등 포함)

위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로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 구청장

210mmx297mm [4선지 80g/㎡]

법정 양식

2년 이상 재학하였음이 확인 가능

법정 양식